

의안번호	2126334
의 퇴 인	김성주 의원
회 답 일	2024.01.30.
추계번호	24C0083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1,700만원, 2029년 1,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6,100만원(연평균 3,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안 제18조)	11	11	11	11	11	55	11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안 제21조)	106	-	-	-	-	106	21
합 계	117	11	11	11	11	161	32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 및 대학치과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 및 치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의 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설립)	(제1항)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학과(약학과, 제약학과 또는 간호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10조(임원)	(제1항)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대학병원장(해당 학교에 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제3항)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제5항)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8조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21조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종합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출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안 제23조(세제지원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제2항) 발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8	안 제28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국가 등의 책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 및 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설립)	×	· 제정안에서 기존 대학병원 외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 ¹⁾ 하도록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립여부 및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3	안 제10조(임원)	—	· 제정안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이사수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되고,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3명 증원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원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증원되는 인원수(1명, 3명)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8조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	
5	안 제21조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	
6	안 제23조(세제지원 등)	×	·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감면조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되어야 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²⁾
7	안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	· 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이에 정부의 출연금 등이 재원으로 투입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발전기금 및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8	안 제28조(전담조직의 설치)	×	· 2024년 현재 대학병원 등에 대한 업무는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조직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이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외에 ‘전담부서’소속 인원 및 조직이 증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른 인력 및 조직충원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점에서 구체적 조직 및 인력규모, 재원 지원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운영(안 제18조), ②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안 제2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19조에 따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며, 이 중 3인(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과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 등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지명된 1인)을 제외한 22인 중 절반인 11인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가정함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연직(공무원) 위원 8인과 위촉직 7인으로 구성된 사례와 안 제1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인 위원과 4호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위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를 가정
 - 회의 참석수당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³⁾으로 하며, 회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의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추계함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대학알리미 및 알리오 사이트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국립안동대 대학원의 경우 기설립된 대학병원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교육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에 대해 지방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비는 회의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의 수에 연간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수당을 곱하여 산출
 -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민간위원 11인에 대하여 연간 회의 4번을 개최하고, 회의 1회·1인당 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1,100만원으로 추계됨
 - － 1,100만원=11인×25만원×4회

[표 2]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립대학병원 발전위원회 (안 제18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의 경우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가 2025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5년 주기’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을 준용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용역⁴⁾의 사례를 준용하여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3]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안 제21조)	106	—	—	—	—	106	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기간: 2021.7.23.~2022.01.19.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